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53

발의연월일: 2021. 3. 5.

발 의 자: 박완수 · 임이자 · 서범수

金炳旭・허은아・최형두

백종헌 · 김용판 · 조경태

강대식 · 추경호 · 김도읍

태영호 • 주호영 • 김성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주택 및 토지공급 정책 전반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내부의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택지 매입이 이뤄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이같은 행위는 국가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토지의 매도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범죄행위로도 볼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

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의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적 행위를 예방하고 매도인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
| 금지) ①・② (생 략) |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③ 공사의 사장은 연간 1회 소 |
| | 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
| |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정기 조사 |
| | 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미 |
| | 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
| | 등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